

보도시점 2023. 11. 8.(수) 11:00 배포 2023. 11. 8.(수) 9:30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

- 국제(글로벌) 표준에 맞춘 시장관행 개선, 안정적인 거래환경 조성, 국내 외국환은행의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 추진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1.7(화)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은행간 시장 관행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23.10.18(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24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시행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되어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기반시설(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1) 국제(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2)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3)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국제 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ldh5758@korea.kr)
	국제 금융국 국제 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차웅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국제 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과 장	이준범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kimminju@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책임자	팀 장
담당자			차 장	백봉현 (bhbaek@bok.or.kr)
담당자			과 장	조현명 (hyeunmyeong@bok.or.kr)
국제총괄팀		책임자	팀 장	양양현 (02-759-5737)
외환건전성조사팀		책임자	팀 장	남선우 (02-759-5532)
외환정보팀		책임자	팀 장	이창헌 (02-759-5756)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1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외환시장 관행 개선

(1) 외환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슈)** 시장개방 후 RFI가 매매기준율(MAR : Market Average Rate)의 신뢰성 문제* 제기 또는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 병존
 - * (FX Global Codes) 시장교란 또는 벤치마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의도의 거래·호가 금지
 - 6.5시간인 MAR 산출시간(G10 통화 5분) 상 왜곡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나 시장교란 소지가 있는 거래관행 개선 필요
- **(방안)**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
 - ①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 ②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
 - ③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 확보

(2)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 **(이슈)** 개장시간이 익일 0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 발생 및 對고객 거래의 당일결제 어려울** 가능성
 - * 국내외국환은행과 해외 RFI와 간에 전자거래시 거래·결제일, 외전망보고 등의 혼선
 - ** 현물환 결제일 불일치(對고객 통상 당일 vs 은행간 2영업일) → 은행은 FX스왑 1~2일물로 조달·운용하여 불일치 해소 → 일중 거래시간 늦어지면 결제리스크 증대
- **(방안)** 개장시간(09~익일 0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
 - * 00~02시 외환거래를 당일(T) 거래로 인식하는 데 대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협의 후 확정 계획
 - Cut-off time 이후의 對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Spot)로 전환

(3) 환율정보 재정립 및 확대

- **(이슈)** 시간연장으로 **종가환율(15:30분)***, **MAR 산출시간(09~15:30분)**, **환율명칭의 재정립 및 다양한 참고환율** 제공 필요성 부각

* 24시간 거래 통화는 통상 런던 16시 또는 뉴욕 17:30분을 closing rate으로 관리

- **(방안)** 원/달러 거래가 韓 자본시장이 개장된 09~16시에 집중 예상되므로 **종가환율 및 MAR 산출시간은 현행 유지***

* 다만 시간연장 후 15:30~16시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경우 30분 조정 검토

- 명칭 : [현물환율] 서울 15:30분 환율(Seoul 15:30 Closing Spot Rate)
[매매기준율] SMAR(Seoul MAR)

-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0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 제공

	현행	개편
시점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5시중 매시 정각, 15:30분 ▸ MAR (09~15: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2시중 매시 정각, 15:30분 ▸ 좌동
평균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2시중 매시 정각 직전 10분간 거래된 시간가중평균환율

※ 선진국 통화는 매 30분마다 5분간 평균환율 산출

2 안정적 외환거래 환경 조성

(1)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 안정

- **(이슈)** 주식·채권시장 종료시점(15:30~45분)에 맞춰 **종가환율로 거래하려는 외국인투자자 수요가 많아 15:30분 환율 변동성 확대**

- 특히 시장불안시 이를 악용한 투기적 행태가 문제

- **(방안)** 15: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 권고***

* 주요 통화도 특정 시간에 고객주문 집중 경향 → 외환부서 거래리스크 증가 → Cutoff time, Last look(거래거절 가능), 분산거래(Fixing 환율 왜곡 회피)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

- 15:20~30분(10분) **평균환율**을 제공하여 거래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동 10분간 **단축키(금액·환율 입력 생략하는 주문) 사용 금지**

(2)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 **(이슈)** API 도입은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 짐을 의미하며, 활성화되면 시장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
- **(방안)**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Minimum Quote Lifespan),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API Rulebook* 도입 <외시협 의결사항>

* 해외에서도 전자플랫폼들은 통상 API Rulebook 운영, 다만 경쟁심화로 점차 완화

	내용 (구체적 기준은 추후 확정)
API 호가 최소 유지시간	·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가격을 0.2초 이상 유지
Quote/Hit 제시 횟수 제한	· 1초당 Quote, Hit 각각 10회 이내(취소 제외)
API Sidecar	·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개장후·장마감전 API 중단	· 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 여부

※ 향후 API 거래규모, 시장영향 등을 지켜보며 API 지침 세부 기준 검토·조정

(3) 은행간거래의 국내 외국환중개사 경유 의무

- **(이슈)** RFI는 자국 중개사를 통한 원/달러 은행간시장 참여를 희망, 국내 외국계 중개사는 해외에 중개업무 위탁을 타진
- **(방안)** 2.7일 발표대로 은행간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

* 해외 중개사 경유나 RFI 간 직거래 허용시 당국 모니터링 사각지대 발생

- 국내 현물환 중개사와 RFI 간의 API 연결 등 국내 중개사(현물환 2개, 스왑 9개)의 준비상황 점검 및 독려

3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

(1) 선도은행 제도 개편

- **(이슈)**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NDF 거래 흡수를 위해서는 연장 시간대 원/달러 딜리버리 시장조성 및 거래활성화 필요
- 하지만 現 선도은행 선정기준에는 시장조성 유인 부재*

* 현물환 양방향 거래점유율 기준으로 상위 6개 은행(現 산업·신한·우리·하나·JPM·CA)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를 실적으로 인정

- **(방안)**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

* 짧은 시간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로서 구체적 기준은 대외 비공개

- **특례** :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現 공제한도: 최소 10%, 최대 60%)

선도은행 제도 개편(안)

	현행	개편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건전성(BIS 8%), 신용도(A-이상) ▸ 외환업무 관련 중징계 無 ▸ 서울장 현물환·스왑 거래점유율 각각 2.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서울장/연장시간 현물환/FX스왑 각각 2.0% 이상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환 거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방향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환 거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 FX스왑 거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별 가중치

※ '24년 선도은행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12월중 선정(단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은 25년 선정시부터 적용)

(2)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 **(이슈)** 해외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내 외은지점도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은행에게만 금지(행정지도), 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문제*

* 국내은행의 영입이 제한되고 경쟁력 있는 환율 제공도 어려워 불리

- 특히 국내은행들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을 제약*할 가능성

* 대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 후 포지션 조정(back-to-back) 채널로서 딜리버리와 함께 NDF 전자거래를 활용할 경우 환위험 관리가 보다 용이해져 경쟁력 있는 호가 제공을 기대

- **(방안)**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 (15:30~익일 02시)에 한하여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 허용**
 - NDF 전자거래 준비기간이 짧고, 모니터링이 용이한 **국내 외은** 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거래부터 허용

(3) 업무대행기관 도입

- **(이슈)**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의무 직접 수행이 어려운 점* 및 **국내외국환은행의 역할 유지 필요성** 부각
 - * 외전망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폐쇄망으로 해외에서 직접보고 불가 등
 - 다만 **국내외국환은행**들은 업무대행시 **법적리스크** 등을 우려*
 - * RFI의 확인·보고의무 관련 업무부담과 법적리스크를 걸림돌로 인식
- **(방안)** 「RFI 지침」상 업무대행 **적격기관***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며, **특례**를 부여
 - * 대행기관 유형 : ㉠ 동일그룹 외국환은행, ㉡ 선도은행, ㉢ 그밖에 기재부 장관 인정 기관#
 - #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23개(11.7일 발표<첨부2>)
 - **특례** :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 허용**
 - 대행기관이 과도한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RFI·대행기관 간 계약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대행기관의 면책 범위 등을 검토

4 향후 계획

□ 과제별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

- 외시협 운영위원회(11.10일) 등을 통해 은행·중개사들의 과제별 이행 계획과 RFI의 시장참여 준비기간을 점검, 이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행·인프라·시범운영 일정 등 개선 요구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신속대응
 - 시범운영 계획 수립(11월중) 및 보완 지속
- ⇒ '24.7월 구조개선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중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과제별 이행 계획(안)

		과제	목표
글로벌 표준에 맞춘 외환시장 관행개선		▶ 국내 외환시장 「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 신설 <외시협 의결 및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23.12월
		▶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물환중개사가 모니터링용 화면 개발하여 단말기에 추가>	~'24.03월
		▶ 對고객 당일 결제 거래의 Cut-off time 시간 확정 <외시협 의결>	~'23.11월
		▶ 개장시간(09-익일02시) 거래·결제일 통일 <외시협 논의: 00~02시 거래 당일(T) 소급 등>	~'24.06월
		▶ 다양한 환율정보 제공 (시간대별 시점·평균환율) <현물환중개사가 시장정보업체(Refinitive, 인포맥스 등)와 협의진행>	~'24.03월
인프라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외환당국 행정지도 공문발송>	~'23.12월
		▶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23.12월
		▶ 국내 외국환중개사 경유 준비 (현물환 API 연결 등) <현물환중개사 - RFI 체결 추진>	~'24.04월
	외환시장 경쟁력 강화	▶ 시장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절차 개정 등>	~'23.12월
		▶ 연장시간대(15:30~익일02시)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 허용 <외시협 안내, 국내은행 - 국내 외은지점 거래 준비>	은행별 준비시점부터
		▶ 업무대행기관 제도 도입(11.7일) 및 시행준비 <한국은행의 외전망보고서 확정·전산개발, 대행기관 - RFI 보고준비>	~'24.03월

첨부 2**대행기관 지정가능 기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4호 각 목 및 제4-4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및 2024년 대행기관 지정가능 기관

기관명	비고
Bank of America Seoul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BNP Paribas Seoul	
Busan Bank	
Citi Bank Korea	
Credit Agricole CIB Seoul	'23년 선도은행
Deutsche Seoul	
Hana Bank	'23년 선도은행
HSBC Seoul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Industrial Bank of Korea	
ING Seoul	
JP Morgan Chase Seoul	'23년 선도은행
KB Kookmin Bank	
KDB Bank	'23년 선도은행
Mitsubishi UFG Seoul	
Mizuho Seoul	
Morgan Stanley Seoul	
NH Bank	
Shinhan Bank	'23년 선도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State Street Seoul	
Woori Bank	'23년 선도은행

※ ABC순

1. 의무이행을 위탁하려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위탁 대상기관이 의무이행의 수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양자 간 협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동일 그룹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